

일본의 난가안정 대책(I)

임덕성
대한양계협회 사무국장

일본이
사상 초유의
계란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견뎌내는 것은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9년 전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장으로 재직 중인 오봉국 박사가 일본의 양계업계를 두루 살펴보고 귀국한 후, 그 나라의 양계산업과 난가안정대책에 관해 본회 월간 「양계」지를 통해 업계에 소개한 바가 있다.

그 당시의 일본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방안을 모색, 양계산업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피안의 불'이 아니라 우리나라 양계여건은 일본에 비해 더 심각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이미 때는 늦었으나 우리도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년도 6월 현재 우리나라 산란계 사육수수는 4천1백 만수로서 해방 이후 6·25의 쓰라린 수난기를 겪으면서도 자생자율로 오늘의 양계산업을 이룩한 데는 말할 수 없는 노력과 희생이 따른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시설과 경영관리면에서는 재래식 이요, 전 근대성을 면치 못하고 있을 뿐더러 심혈을 다해 생산한 달걀은 주로 중간 유통업자의 의도에 따라 산지거래가격이 형성되는 등 양계산업 안정화를 위한 난가안정 기본대책도 없이 오늘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작년 계란 수입량은 3만85톤(생란, 난황, 난백, 난황분, 전난분, 동결란)-생란(Shell egg)으로 환산하면 4만1백34톤-이나 되고 일본의 달걀값도 사상 초유의 하락세를 형성하였으나 이들이 견딜 수 있는 까닭은 생산농가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구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일본은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닥쳐오는 양계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1961년에 제정한 축산안정법을 바탕으로 하여 계란의 시장출하 조정 및 보관사업을 전국 판매조합연합회로 하여금 시행케 하였으나 하수기관(荷受機關)으로서의 연합회는 보관업무의 위험부담과 저장 수용능력의 제한 등으로 그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워졌다. 뿐만 아니라 난가안정을 기한다는 목적과는 달리 역부족으로 사업의 한계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생산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계란가격안정기금법(1966년 제정)을 만들어 1969년에는 전일본난가안정기금(사단법인)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 기금만으로는 재원의 부족현상과 생산자가 원하는 보상금의 미달 등의 문제가 생겨 시장가격 형성에 생산자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전국액란공사(1971년 설립)을 발족시키게 되었다.

전국액란공사는 액란을 저장·보관하여 시장과 격리시켜 난가안정(상승)을 기한다는 근본목적도 있으나 난

가안정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이를 밑받침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난가안정기금은 값이 좋을 때 일정한 기금을 적립했다가 값이 폭락했을 때 보전해 주는 제도이므로 계란수급 조절기능은 갖지 못하고 있으며 액란공사가 잉여물량을 수매 저장하여 시장 격리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난가안정을 피하는 기능을 갖는다면 이 두가지 제도는 병설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일본에는 농협계통의 기금(전일본난가안정기금)과 상사계통의 기금(전국계란가격안정기금)의 두가지 기금이 있으며 작년도 두 기금의 계약 농가수는 6천3백 65호(전일본 3천3백86호, 전국계란 2천9백79호)로서 국고 보조금은 13억2천4백만엔이었고 금년에는 13억1천1백12 만4천엔이 보조된다고 하며 계약물량은 11만4천9백톤으로 보전단가는 kg당 10.56엔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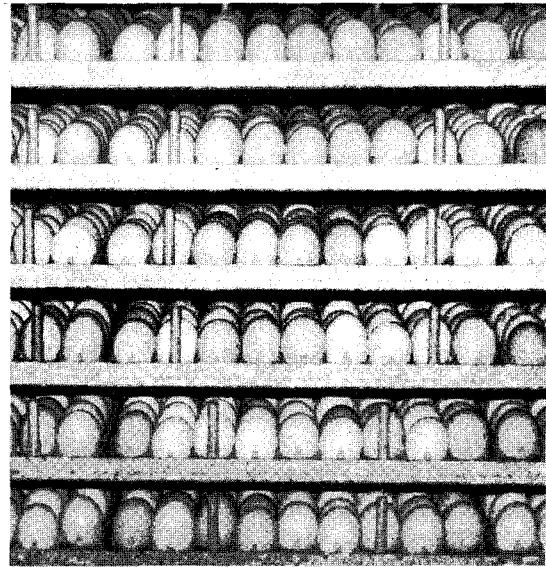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농협계통을 통한 사단법인 전일본난가안정기금의 정관과 업무방법을 요약해서 기술하려는 것이며 위낙 내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직접 실무를 경험하지 못한 입장에서 어느 정도 깊이있게 다룰지는 의문이나 현재 우리 양계업계에서 양계안정기금의 제도화를 부르짖고 있는 시점에서 참고가 되고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 기금은 농협조합 또는 농협조합연합회가 실시하는 계란 생산출하의 전국적이고 계획적인 조정을 기초로 하여 계란가격 변동에서 생기는 계란 생산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서 계란생산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양계 경영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으로는 첫째로 계란의 가격차액 보전계약의 체결, 보전적립금의 징수 및 가격차액 보전금의 교부, 둘째로는 계란의 조정보관에 따른 손실보전 및 이익수납에 관한 계약의 체결과 손실보전금의 교부 및 이익금 수납, 세째로 전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주사무소는 도쿄).

기금의 공고는 기금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면 일본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기금의 회원은 출자회원과 비출자회원으로 하고 출자회원은 첫째, 계란생산지도와 공동판매를 실시하는 농협조합 또는 농협조합연합회로서 전국을 망라한 지역이어야 한다.



둘째, 계란생산지도와 공동판매를 실시하는 농협조합 또는 농협조합연합회로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구역을 지구로 하는 것으로서 위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어야 한다.

세째, 축산진흥사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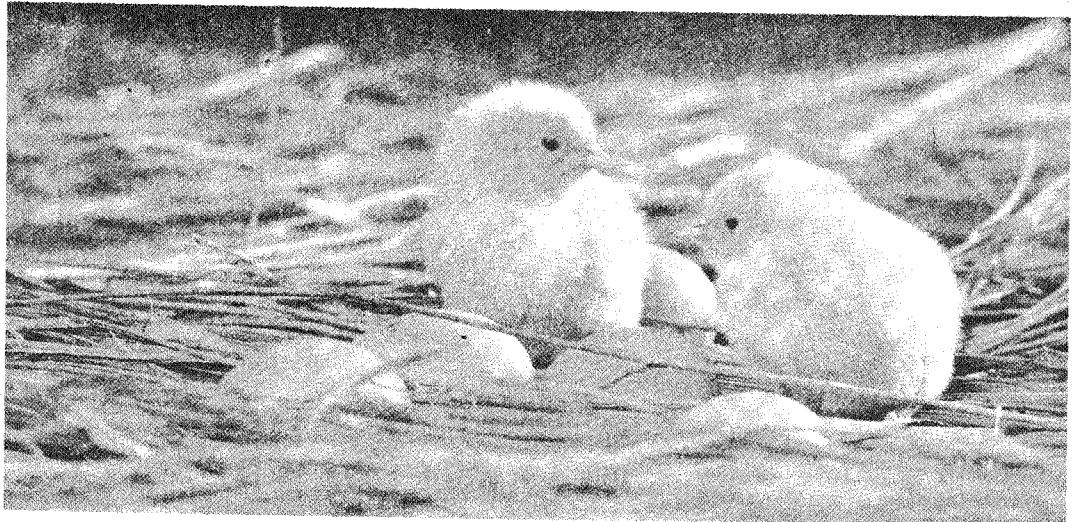
네째, 기금의 취지에 찬동하는 지방 공공단체

다섯째, 기타 기금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는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 비출자회원으로 할 수 있다.

출자회원은 출자 1구좌 이상을 가져야 한다. 출자 1구좌는 10만엔이며 현금으로 불입해야 하며 출자회원은 출자금 불입에 있어 상쇄(相殺)로서 기금에 대항할 수 없다(※이 때의 상쇄는 다른 비목과의 상호계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짐작된다).

출자회원은 기금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 지분(持分)을 양도할 수 없으며 출자회원이 아닌 자가 양수코자 할 때에는 기금가입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대해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또한 출자회원은 지분을 공유할 수 없으며 출자회원이 합병에 의해서 해산했을 경우는 그 포괄승계인으로서 출자회원 자격을 가진 자가 기금에 대한 포괄승계시부터 30일 이내에 출자회원의 경우는 승계의 신고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가입신고를 하여 기금이 이를 승인했을 때 포괄승계인의 지분에 대해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또한 출자회원이 될 수 있으며 피포괄(被包括) 승계인의 지분에 대해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기금의 출자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및 출자구좌수를 기재한 가입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 제출하여 기금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축산진흥사업단 및 지방 공공단체가 아닌 법인은 정관과 대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② 기타, 기금이 필요로 하는 서류

기금은 이를 승인하면 신청자에게 승인통지를 하고 신청자는 출자금의 불입과 함께 기금의 출자회원이 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체없이 그 취지를 기금에 계출(屆出)하여야 한다.

① 회원자격을 상실했을 때

② 명칭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③ 축산진흥사업단 및 지방 공공단체가 아닌 법인으로서 정관 또는 대표권자의 성명 내지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었을 때는 탈퇴한다.

① 회원자격을 상실했을 때

② 해산

③ 제명

회원은 전항의 규정 이외에 6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기금에 미리 통고하여 사업년도 종료시에 탈퇴할 수 있다.

단, 기금과 계란가격 차액보전 계약을 체결한 회원에

있어서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면 탈퇴할 수 없다.

기금은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명할 수 있으며 이때 기금은 총회 10일 전까지 그 회원에 대해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① 기금의 정관, 업무방법서 또는 규정에 위반했을 때

② 기금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케한 행위를 했을 때

기금이 제명 결의했을 때도 그 사유를 명백히 한 서면을 그 회원에게 통고해야 한다.

출자회원이 탈퇴했을 때 본인은 그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려청구를 할 수 있으나 탈퇴시부터 3년이 경과되면 무효가 된다.

전항의 청구가 있을 때 기금은 그 자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말에 있어서의 기본재산액에 당해 사업년도말에 있어서 불입이 끝난 총 출자구좌수에 대한 그 자가 불입한 구좌수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그 자의 출자한도액으로 하여 반려한다.

기금은 탈퇴한 회원이 기금에 대해 지불할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전항에 의해 반려할 금액과 상쇄할 수 있다.

기금은 이사 9인 이상 18인 이내 및 감사 3인 이내의 임원을 두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 및 감사는 겸임할 수 없다. 그리고 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사장 1인

과 상임이사 1인을 호선한다.

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며 기금의 업무를 총괄하고 상임이사는 기금의 일상업무를 처리하고 이사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리하며 이사장이 공석일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사장 및 상임이사 이외의 이사는 당초에 이사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장 및 상임이사 모두가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공히 공석일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감사는 민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으며 보궐 또는 중원에 의해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다른 임원의 임기기간과 같다.

임원의 임기만료일이 그 임기 중의 마지막 결산기에 관한 통상총회일 이전일 경우에는 그 임기를 당해 통상총회가 끝나는 날까지 연장한다.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이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의하여 퇴임했을 때에는 그 이사 또는 감사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원은 임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기금은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기금에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회는 이상의 자문에 응하고 다음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 ① 계란가격차액보전에 관한 사항
- ② 기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사항

평의원은 20인 이내로 하고 다음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 ① 농림수산성 직원
- ② 도도부현(都道府縣) 직원
- ③ 축산진흥사업단 임직원
- ④ 회원인 농협조합 및 농협조합연합회 임직원
- ⑤ 기타 계란의 생산, 판매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정관에 정한 이외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사장이 정한다. <다음호에 계속>

제3차 가축육종연구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 일시 : 1988년 8월12일(금) 9:30~17:00

■ 장소 : 축산시험장 대강당
(수원시 오목천동 TEL. 32-5116)

■ 특강 : ① 제6회 세계축산학회 총회 보고
- 한성욱 교수(충남대)
② 천호 가금육종 10년
- 정기홍 과장(마니육종)

■ 학술발표 :

① 정자형성에 관한 세포유전학적 연구와 유전
공학 연구동향
- 손진기 박사(KAIST)

② 난용종계의 주요 경제형질과 난구성분의 유
전적 모수 및 선발지수 추정에 관한 연구

- 상병찬 교수(충남대)

③ 샤로레종 유전형질 도입에 의한 한우 개량에
관한 연구

- 나기준 박사(축산시험장)

④ 난용종계의 선발에 의한 유전적 개량량 추정
에 관한 연구

- 최연호 교수(신구전문대)

⑤ 닭에 있어서 G.C-banding 형태에 의한 염색
체 표지인자에 관한 연구

- 손시환 박사(서울대)